

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	2006. 12. 29	규칙	제 522호
개정	2009. 1. 12	규칙	제 571호
	2009. 11. 20	규칙	제 591호
일부 개정	2011. 11. 29	규칙	제 653호
일부 개정	2012. 6. 14	규칙	제 679호
전부 개정	2014. 6. 9	규칙	제 743호
일부 개정	2015. 4. 13	규칙	제 784호
일부 개정	2018. 9. 28	규칙	제 930호
일부 개정	2018. 12. 20	규칙	제 946호
일부 개정	2021. 4. 12	규칙	제 1028호
일부 개정	2023. 4. 12	규칙	제 1100호
일부 개정	2026. 1. 20	규칙	제 118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의 범위) ① 「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에서 규정한 “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9. 28>

1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
2.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
3.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4.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

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제3조(센터의 운영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 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

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임원 및 직원의 급여,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
3. 정관,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센터의 조직 및 정원 등) ① 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하며,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·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, 2023. 4. 12, 2026. 1. 20>

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직원임용 및 자격요건)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방법으로 임용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센터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20>

제6조(임기 및 정년) ① 센터 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다.

② 계약직 직원(센터 장을 포함한다)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. 다만,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제7조(직원의 임면 및 보수·복무 등)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면, 인사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, 센터 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 9. 28]

제8조 삭제 <2018. 9. 28>

제9조 삭제 <2018. 9. 28>

제10조(지도·감독·감사) ①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센터의 업무,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시장은 센터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

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·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·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센터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제11조(센터의 지원 등) ①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9. 28>

③ 삭제 <2018. 9. 28>

[제목개정 2018. 9. 28]

제12조(실비 지원)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9. 28>

②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<신설 2018. 9. 28>

[제목개정 2018. 9. 28]

제13조(지원센터 운영) ① 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기준 및 방법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]

제14조(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) 센터 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9. 28]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시행 규칙」은 폐지한다.

③ 이 규칙 시행 당시,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고용된 센터의 사무원의 잔여

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09. 1. 12 규칙 제57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1. 20 규칙 제59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1. 29 규칙 제65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6. 14 규칙 제67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6. 9 규칙 제74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, 종전의 규칙에 따라 고용된 센터 직원
의 남은 기간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5. 4. 13 규칙 제78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9. 28 규칙 제93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12. 20 규칙 제94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4. 12 규칙 제102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4. 12 규칙 제110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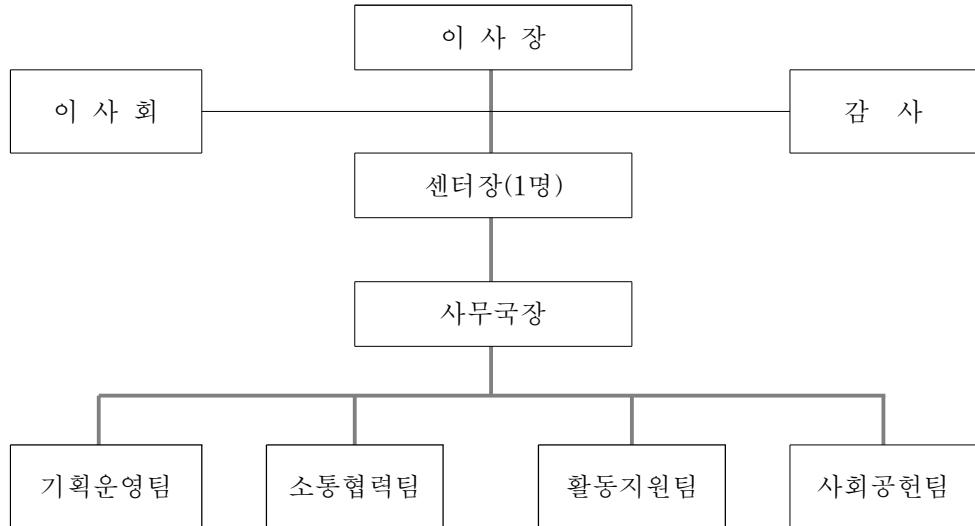
부칙 <2026. 1. 20 규칙 제118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6. 1. 20>

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 및 정원(제4조 관련)

□ 기 구



□ 정 원

구 분	급 수	정원(명)	비고
계		19	
센터 장	4~5급 상당	1	
사무국장	5~6급 상당	1	
팀 장	6~7급 상당	4	
대 리	7~8급 상당	4	
팀 원	8~9급 상당	9	

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표 2] 삭제 <2018. 12. 20>

[별표 3] 삭제 <2018. 9. 28>

[별표 4] <개정 2023. 4. 12>

자원봉사활동 실비 보상금 지급기준(제12조 관련)

구 분	지 급 기 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·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자(단체포함)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봉사시간 : 1일 4시간 이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교통비, 간식비 : 3,000원 이내- 급식비 : 「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2에 따른 공무원 급식 단가 이내- 활동용품비 : 실비

[별지 제1호서식] 부터 [별지 제2호의2서식] 까지 삭제 <2018. 9. 28>